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6)

자료제공 / 조달청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칙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Q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에 따른 조정률을 산출은?

A

- 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에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변동을 산정
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함
※ “설계변경당시”를 설계변경 기준일로 본다.

〈“설계변경 당시”의 적용 기준〉

-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 변경도면을 발주 기관이 확정할 때
-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경우 :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함

- ② 물가변동 조정요청 시 설계변경당시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설계변경 도면 확정 문서
 - 계약당사자간 합의문서, 계약문서 등
- ③ 설계변경으로 2차, 3차, 4차에 신규품목 발생 시에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일로 하여 조정률을 산출하여야 한다.

- ④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시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한다.
 -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을 산정 시 기준시점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품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조정기준일과 설계변경 관계〉

시점	실시내용	결과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 내역으로 계약금액 조정
	이후	기준일이전 내역으로 계약금액 조정후 정산

! 관련 규정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2호
- 회제41601-1093, '02. 08. 09
- 회제45107-236, '97. 02. 04
- 회제45107-393, '95. 03. 23

Q

물가변동 조정 시에 사용한 각종 비목별 지수 및 제경비 요율 적용 기준은?

A

① 각종 비목별 지수 및 제경비 요율의 적용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비목구분	지수검토기준
1. 노무비(A)	◎ 공사부분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직종별 평균노임 ◎ 제조부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발표 직종별노임의 평균치 ◎ 건설공사 감리부분 - 한국건설감리협회 기준 인건비
2. 기계경비(B)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평균치
3. 재료비(C, D, E, F) -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농림수산물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통계월보상 생산자 물가지수(매월말지수)
4. 실적공사비(G)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단가의 전체 평균치(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5. 산재보험료(H)	◎ 노동부 발표 연도별 산재보험 요율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 노동부 발표 연도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요율
7. 고용보험료(J)	◎ 국토해양부 고시 요율
8. 건설 퇴직금제부금비(K)	◎ 국토해양부 고시 요율
9. 국민건강보험료(L)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직전조정일'09.2.12이전) ◎ 국토해양부 고시 요율(직전조정일'09.2.12이후)
10. 국민연금보험료(M)	◎ 국민연금법(직전조정일'09.2.12이전) ◎ 국토해양부 고시 요율(직전조정일'09.2.12이후)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N)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2. 기타비목(Z)	◎ 노무비 및 재료비 지수 적용

-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㉔